

주류 안전관리 영상 민원설명회

Q&A

2020.6



식품의약품안전처
주류안전정책과

Q & A

- ✓ Q1.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컨설팅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? 해당 컨설팅에 HACCP이 포함되는지와 제조시설 온도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받고 싶은데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.

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는 매년 4~6월경 컨설팅 대상 신규 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,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권역별(수도권, 중부권, 영남권, 호남권)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컨설팅에는 HACCP내용도 포함되며, 제조시설 온도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 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

★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홈페이지(www.mfds.go.kr)의 알림>언론홍보자료>보도자료에서 '식약처, 소규모 주류업체에 식품안전관리 기술 지원('20.5.29.)' 게시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.

Q & A

- ✓ Q2.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주종에 대해서도 판매 목적이 아니라면 제조가 가능한 것이지요?

식품제조·가공업체로서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하는 식품은 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제조하는 주류를 포함한 식품의 연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라면, 해당 업체에서 제조·가공하는 모든 식품(주류 포함)은 HACCP을 적용하여야 합니다.

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)제1항제13호

식품제조·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·가공하는 식품

Q & A

- ✓ Q3. 수입식품 표시 중 정보표시면의 장평, 자간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
수입 주류 생산일, 선적일, 통관일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표시해야 하나요?

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 규정에는 글자비율(장평) 및 글자간격(자간)에 관한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(21.3.14. 시행)*, 수입주류의 정보표시면의 표시는 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에 따라 선적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.

* 「식품위생법」(법률 제15484호, '19.3.14.시행)부칙 제2조에 따르면 「식품표시광고법」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('21.3.13.)는 종전의 제10조·제11조·제11조의2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.

「식품등의 표시기준」

부 칙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제조·가공 또는 수입(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및 용기·포장(이하 "식품등"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 다만, 이 고시 시행 전에 이미 제조·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등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.

Q & A

✓ Q4. 주박 관련 법은 언제 개정되나요?

현재는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 이외의 식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주류 제조 시 생산되는 주박 등의 부산물과 주류 제조시설에서 생산 가능한 음료 등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관련 고시 개정(안)을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.

『주류의 제조, 저장, 이동, 원료,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』 제10조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(국세청 소비세과, 의견수렴기한 '20.6.1~6.22)

Q & A

- ✓ Q5. 소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도 탁주 제조 시 나오는 주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나요?

현재 우리처는 기재부·국세청과 협의하여 주류에서 제외되어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주박의 범위, 분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해당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는 대로,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,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하여 영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하겠습니다.

Q & A

- ✓ Q6. 주류 제조용기를 공통으로 이용하려면 다른 주류면허를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까?

주류제조면허는 한 장소에서 같은 주종에 다른 유형(일반면허, 전통주면허, 소규모면허)의 면허를 추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, 다른 주종의 면허를 각각 받아야만 주류 제조용기 공통사용에 대한 조건이 성립합니다.

주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

하나의 제조장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주류 제조장에 주류제조용기 세척 전문설비를 갖춘 때에는 그 시설을 주류의 종류별로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(064-730-6271~2)에 문의 바랍니다.

Q & A

- ✓ Q7. 주세법시행령 제5조 2항의 내용에 따라 CIP시설을 갖춘 조건이라면 주종별로 주류 제조설비를 별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까?

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세부적인 사항은 주세법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, 주류의 종류별로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규정된 기준을 주류의 종류별로 각각 충족하여야 합니다.

2개 이상의 면허(예:탁주, 약주)를 받아 주류(예:탁주)를 제조할 경우 승인을 받아 다른 주류(예:약주)의 제조 용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, 또한 부대시설(세병시설, 주입시설, 타전 시설 등)을 공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(064-730-6271~2)에 문의 바랍니다.

Q & A

- ✓ Q8. 식당이나 술집에서 주류 자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?

주류판매업자는 주세법 제40조에 위임받아 명령된 국세청 고시 제2019-08호(주류의 양도·양수방법,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) 제11조, 제12조에 의하여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(064-730-6271~2)에 문의 바랍니다.

Q & A

✓ Q9. 인터넷상에서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교육 자료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?

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(<https://i.nts.go.kr/Default.asp>) → 자료실 경로로 들어가시면
아래 자료에 대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알기쉬운 알코올분 측정방법
- 주류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
- 소규모주류제조자를 위한 가이드북
- 주종별 주류 제조방법신청서 작성요령

※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(064-730-6271~2)에 문의 바랍니다.

Q & A

✓ Q10. 유색병 사용에 대한 규제가 있나요?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18.12.24공포, 2019.12.25시행)에 따라 제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제도*가 시행중에 있습니다.

*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'재활용 최우수/우수/보통/어려움'4단계로 등급화

※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(044-201-7389)로 문의바랍니다.

Q & A

- ✓ Q11. 수입쌀로 입국을 만들고 덧발효시 국산쌀 사용하는 경우 표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?

입국(식품첨가물)에 사용된 수입쌀은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, 덧발효 시 국산쌀을 사용하여 술을 만드는 경우 국산쌀에 대한 원산지는 표시되어야 합니다. 원재료명 표시란에 원산지 표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예) 쌀(국산), 입국...

※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(054-429-4158)로 문의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



식품의약품안전처